공고 제2019-094호

2019년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9년도「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업별 연간 훈련비 지원액 한도, 업무공백 등 사유로 인해 직무능력향상훈련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인건비 및 대체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훈련환경이 우수한 대기업·연구기관 등에서 체계적인 유급휴가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공고규모)** 중소기업 근로자 190명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은 변동 가능

□ **(참여유형)**

○ **개별기업 단독참여형** : 참여신청 기업이 훈련기관 발굴, 훈련과정 개발 등 전체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

○ **운영기관 지원형** : 훈련 전반(훈련기관 발굴, 훈련과정 개발 등)을 총괄 지원하는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 훈련 진행

* **운영기관 역할**
  · 훈련기관 및 참여 중소기업 발굴·매칭
  · 훈련기관과 운영기관 간 협약체결 및 사업제안서 작성
  · 훈련 프로그램 개발
  · 훈련과정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등

□ (지원내용)

○ **훈련비** : 훈련기간 동안 훈련 근로자 1인당 월 83만원 지급(훈련기관에 지급)

* 단위기간(30일) 별 최소 훈련시간(60시간) 충족 시 지급

○ **인건비** : 훈련대상자 인건비 지원_최저임금 150% 限(참여기업에 지급)

○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_최저임금 100% 限(참여기업에 지급)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지급

○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 **운영기관 지원형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프로그램 개발, 행정절차 등 지원

○ **운영기관 수당** : 참여 중소기업 1개 당 최대 300만원(운영기관에 지급)

*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훈련기간	30일 이상	31일 이상 ~ 60일 미만	60일 이상
지급액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프로그램 개발비** : 500만원

* 개발주체(운영기관 또는 훈련기관)에 지급. 별도 프로그램 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미지급

□ (사업 진행절차)

제안서 공모·선정	⇨	훈련과정 개발보고서 제출	⇨	훈련과정 인정 심사	⇨	훈련실시	⇨	종료 후 성과평가
공단		훈련기관(운영기관), 중소기업		공단		훈련기관		공단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간 유급휴가를 주어 직무향상훈련을 실시하려는 기업으로,

* **유급휴가훈련 요건**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할 것
  ·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휴가의 경우로써,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통상임금 미만으로 임금지급시 지원대상 아님)
  · 계속하여 훈련기간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훈련을 시키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일 것
- 기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일 것
- 해당 기업과 소속된 훈련대상 근로자는 훈련기간의 1배에서 3배 이내로 의무근로약정을 체결한 상태일 것
-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장기근속자, 소규모 기업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심사 시 우대

* 고용위기지역 :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 경남 통영, 경남 고성, 전북 군산, 전남 목포, 전남 영암

□ **(신청요건)** 운영기관의 경우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이 사업 취지에 부합해야 함

○ **운영기관** : 훈련기관·참여기업 발굴,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과정 운영(관리) 등 훈련 전체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기관으로,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일 것

- **운영기관 자격기준**

· 노사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또는 노사단체 부설기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근거한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및 전문지원기관, 지역인자위(RC), 산업별 인자위(ISC)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한국폴리텍대학교

·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한국능률협회

· 기타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

○ **훈련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 등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일 것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법상 3년 평균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 상기 기관 외에도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공단 심사를 통해 훈련기관으로 참여 가능

○ **훈련과정**

- **훈련기간은 30일 이상**(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추가모집의 경우 9월~11월 중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한정**(11월 말까지 종료되어야 함)
- 훈련방식은 기존 생산·연구시설 등을 활용한 현장훈련(OJT), 별도 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 외 훈련(OFF-JT) 모두 가능하나, 참여 기업이 많은 경우 최종 선정시 **현장훈련(OJT) 방식의 훈련과정 우대**
-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향상 과정으로 국내 진행과정에 한하며,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제외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7. 22.(월) 18:00까지

□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부

* 제출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5층 사업주훈련지원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하며, 내방서류 접수는 토·일요일은 제외

○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으로 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좌 편철 후 기관별 5부 제출*(파일은 USB에 담아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사업 참여제안서, 기타 증빙서류 **합철**하여 제출

*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제안서 5부 및 제안서(별첨자료 등 포함) 수록 USB
* 이메일(ws0225@hrdkorea.or.kr)로도 별도 송부
② 의무근로약정서(양식자율, 참여기업 및 근로자 날인 필수)
* 훈련대상 근로자는 참여기업과 합의 하에 훈련기간의 1배~3배 이내의 의무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훈련기관, 참여기업 각 1부)
④ 고용보험료납입증명원
⑤ 기타 제안서 내용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신청 및 제안 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소식공간/모집중인 사업)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4 선정심사 및 발표

□ (심사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 (심사절차)



□ (심사 주요항목)

○ **기본요건 심사**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요건 적부 확인

○ **서류심사** : 참여기업, 훈련기관, 훈련과정 등 지표로 구분하여 적정성 심사

<심사표(안)>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기본요건 심사	적·부	참여기업 요건	적·부
		훈련대상자 요건	적·부
		훈련기관 요건	적·부
		원직복직 약정	적·부
참여기업(35)	정량	(계량)소규모 기업 우대 필요성 정도	5
		(계량)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5
		(계량)훈련대상자의 장기근속 정도	10
		(계량)훈련대상자 국가기술자격 보유여부	5
		(계량) 재직 가능기간(기업활용도)	5
	정성	담당업무의 전문성 필요 정도	5
훈련기관(30)	정성	훈련기관과 사업의 적합성	10
		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수준	10
		훈련기관의 교·강사 인력의 확보 수준	10
훈련과정(35)	정성	훈련과정 목표, 내용, 평가방법의 적정성	10
		훈련과정 교·강사(멘토)의 전문성	10
		훈련기간의 적정성	10
		훈련 방식 우대 여부	5
계			100

※ 평가지표 일부 변경 가능

○ **현장심사** : 서류심사 결과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 전원 합의하에 별도 현장심사 실시

□ **선정발표**

○ **발표일자** : ’19. 7. 31.(수)

* 발표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유의사항

□ **(선정배제)**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위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선정취소)**

○ 선정 통지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선정 이후 무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훈련을 이관 또는 재위탁한 것이 발견된 경우
- 선정 이후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이 선정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항)

○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제출한 사업제안서 상 기재한 훈련시작일 2주 전까지 세부 훈련계획서 및 훈련과정 개발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훈련이 종료된 경우 2주 이내에 훈련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단의 사업성과 평가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 이후 부실한 훈련과정 운영 등*으로 적발된 경우 주의 및 경고, 다음년도 사업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훈련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훈련계획서 내용과 상이한 과정 운영 등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지원부(052-714-8277)